

# 「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

## 일부개정훈령안

#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의 설치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기술지원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#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의료급여법 제5조의2,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4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 등, 없음

## 보건복지부 훈령 제 203호

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(보건복지부 훈령 제144호, 2020.1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2년 10월 11일  
보건복지부장관

### 「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

#### 일부개정훈령안

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보험공단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제4조제2항 중 “심사평가원의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보험공단의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, 제13조 중 “원장”을 “이사장”으로 하고, 제5조제5항,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“심사평가원”을 “보험공단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단 설치) 지원단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“심사평가원”이라 한다)에 설치한다.</p>	<p>제3조(지원단 설치)-----「국민 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보험공단”이라 한다)-----.</p>
<p>제4조(지원단의 조직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<u>심사평가원의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</u>이 정한다.</p>	<p>제4조(지원단이 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 <u>보험공단의 이사장(이하 “이사장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
<p>제5조(단장 등의 임명) ① 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<u>원장이 임명한다.</u> ② (생략) ③ 단장은 지원단의 직원을 감독하고,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<u>원장에게 보고</u>하여야 한다. ④ 지원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<u>원장이 임명한다.</u> ⑤ 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심사평가원의 관계규정</u>을</p>	<p>제5조(단장 등의 임명) ①----- ----- <u>이사장</u>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u>이사장</u>----- -----. ④ ----- -- <u>이사장</u>-----. ⑤ ----- ----- ----- ---- <u>보험공단의</u> -----</p>

적용한다.

제6조(자문위원회 구성) ①~② (생략)

③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.

④~⑤ (생략)

제7조(회계의 분리) 원장은 지원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)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인력의 파견 및 지원) ① (생략)

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을 지원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-----.

제6조(자문위원회 구성) ①~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이사장-----.

④~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회계의 분리) 이사장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) ① 이사장-----  
-----  
-----.

② 이사장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인력의 파견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이사장----- 보험공단  
-----  
-----.

③ (생략)

④ 원장은 지원단에 파견·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십사평가원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 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육비 징수) ① 원장은 의료급여와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.

② 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다른 규정의 준용) 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십사평가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.

13조(보칙)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이사장-----  
-----보  
험공단-----  
-----  
-.

제11조(교육비 징수) ① 이사장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 이사장-----.

제12조(다른 규정의 준용)-----  
-----  
-----  
보험공단-----  
-----.

13조(보칙)-----  
-----이사장  
-----.